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8다41429 기타(금전)

[담당재판부:민사3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총11페이지.

## 1. 서 론

1. 처음 책을 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혹시나 하고 그 당시 영덕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여 행정법원에 소장(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을 냈습니다.

진행 중 성남민사법원(2007가합3175)에 이송되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행정법원 때의 주장 그대로이며 신분보장기금 사실조회서도 다시 냈습니다. 변론 때 피고에게 "사실조회 신청한 것 해주세요. 라고 하니 "못 해주" 했습니다. 그걸 보시던 판사님은 피고에게 "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판사님에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사실조회 통보 없었고, 이유 없이 각하판결 이었습니다.

항소장을 내고 다시 영덕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왜 상당한 내용과 다르게 민사법원으로 이송했으며, 왜 각하 판결입니까? 하니 판사님이 한 것 우리가 판단 할 수 없다 며 검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니 돈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조합활동 피해자 인지 아닌지를 법률로 확인하면 된다고 하니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여러 번 상담경험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잘 가르쳐주는데 판사님이 판결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답변도 하지 않으려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려고 알아보니 서울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허락 받아 소송내용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사건을 KT노동조합에 연락했습니다. KT노동조합에서 타당한 답변 없으면 소송하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답변 없었습니다.

'소송합시다.' 하시더니, '항소장 낸 것 취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어 ‘왜 그러니까?’ ‘취하 못하시면 가만히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비용도 없습니다.’ 하니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맡기시고 간섭은 하지마세요 간섭하면 못해줍니다.’ 했습니다. 그 때는 궁핍했었고 또 몸이 정상이 아니라 법률 상담하러 오가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울 때라 간섭하면 이분이 안 해 준다는데 그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네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1심 성남지원 2009가합9702 때는 사건번호 알고, 그 이후에 증언해 줄 사람 있냐고 묻기에 알려주고는 주장내용이 어떤지는 몰랐습니다. 예상은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혹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싶었으나 간섭하면 안 해 준다는데 그러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각판결 알고는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쯤에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와 항소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정해도 못해준다는 걸 어떻게합니까? 제가 합니다. 내용 보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 하고 소송내용 검토 해보니 이해가 안 되어 변호사님께 전화 연락을 해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게 이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왜 이송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합니다.’ 하니 ‘안 됩니다.’ 했습니다. ‘안되긴 왜 안 돼요. 왜 성남법원에서 주장 안했습니까?’ 하고는 전화 끊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상담 및 전화통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률상당한 변호사님은 남자분이고 전화 걸려와 항소 못한다고 하신분은 여자분 마지막 통화하신분도 여자분 ‘2009가합9702’ 사건 내용 검토하시면 변호사님 이름 있습니다.

☞. 판결문에 “1심에서 임금피해액 이천만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기각이유가 되어 있어 설명합니다. 이견 제 뜻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서 권리 주장을 하면 약자라고 혹은 법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면으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궁핍한 상태에서 변호사님께 맡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2. 그 당시 8대노조위원장하고 전화통화 했습니다. 위원장은 노조간부면 업무상 국장을 썰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된 갑17호증은 노조간부님들이 회사사장 면담요청 하여 거절당해, 사장실 지붕 뚫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갑 제14호증을 보면 노조간부가 조합비로 톱살통에서 양주를 먹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 실명위기까지 몰고 가는 폭행을 하고, 또 회사 내에서도 폭행을 해도. 노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아무런 제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실 지붕 뚫고들 어가 해고되어도 해고기간 월급 및 복지혜택을 주고,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폭력합의도 신분보장규정 근거로 조합비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분보장 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1~5대 노조위원장 당선될 때까지는 회사에서 노조선거 개입 없었고 불법파업 집회 폭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힘센 노동조합의 불법은 모른척하고, 힘이 약한 조합원 한사람의 정당한 것을 묵살한 사건입니까? 2016재나905때부터 주장한 내용대로 법이 개정 혹은 정비 된 후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 2. 있었던 일

1. 2001년 6월15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목 뼈 골절 및 안면 타박상으로 최종은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치료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4일 제 의사와 다르게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여, 처음에 담당과장님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면 좋습니다. 또,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누워있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고 사정 예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죽변분기국사가 다른 곳 보다 일이 적다고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죽변분기국사는 제가 근무해보았던 곳인데 실내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일 하는 곳이라 몸이 불편 해 할 수 없다고 예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통증이 있는데(머리 목 어깨부분) 보기에겐 멀쩡해 보이고, 최종 “의사 장애진단서(갑 제11-1호증)”에는 머리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아프다고 하면 피병이라고 했고, 머리 부분이라 중요하게 생각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갑 제8-1호증)” “재심사결정서(갑 제8-2호증)” 를 했습니다.

죽변 분기국사에 일 할 수 없어 처음에는 병가 및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이용하고 과장님께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진행 중이라고 상담하니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갑 제9호증. 제25조(휴직참고))” 휴직하려고 했으나 다른 분에게 연락도해보고 하시더니, 갑자기 휴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휴직사규를 보여주지 않았고, 회사사규를 치워버렸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병이라고 하시어 “그 당시 치료받았던 병원 의사진단서(갑 제11-2호증)”도 제출 했습니다. 그래도 피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 출근해야 하므로 시설운영과로 출근했습니다. 시설운영과는 사무실인데 제 책상도 없고 해서 케이블운영실은 현장에서 전주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퇴근 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으로

목 안대를 하거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과장님이 꾀병이라고 했고 병원 치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로”책을 낸 것은 회사를 망신 시켰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사유서를 요구해 사유서도 여러 번 적었습니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 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사규(갑 제9호증. 제25조(휴직참고))를 보면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을 활용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2010나173583때 다시 제출한 것” 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하여 회사와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했고 ~ ”

“ ~ “폭로(‘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과 같은데 처음2002년4월에 낸 책)책을 출간한 것은 다분히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인정된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에 포함됐습니다. 징계사유통보서에 있다 고해도 저에게만 이치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건 부당합니다.

(‘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갑 제14호증’ 다른 분들의(인터넷 게시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2009가합9702때 피고는 2010. 1.2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무런 계산근거도 없이 막연히 이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청구취지 금액의 명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대충 짐작해서 청구하려고 해도 소송인지비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3. 법원에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이 징계사유에 대해 얘기 했습니다. 징계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송신청 철회를 원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행정법원에서 성남 민사법원으로 이송 될 때 민사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조회 신청해 노동조합에서 거절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각하 판결 받아 이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 진실을 밝히려면 행정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하여 기각 당했으나 판결로서 이송해 달라 고 주장 했습니다.

#### ◎. 2016재나35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38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1다17434때 주장한 내용. 아래처럼 주장했습니다.

☞. 그동안 여러 번의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높은 양심과 도덕심으로 이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을 보면, 저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감사한 노동조

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천만원 지급 판결 받아 위의 주장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2016재나905때에는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아래처럼 재심청구원인 변경을 했고, 법을 개정 혹은 정비해 달라고 민원을 하니 법원행정처 답변은 계속적으로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 판사님 권한으로 대법원장님께 권의를 하셔서 민사소송법을 개정 혹은 정비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4. 소송 진행 중 협박당한 내용

○.이사건 2013재나20007 9월4일 변론 때 큰 체격의 노조간부님이 오셨습니다.

변론 마치고 법정을 나온 후 (가까이 다가와서)

“왜 자꾸 소송합니까?”

“조합활동 피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인정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등의 폭언을 하여 억압당했습니다.

## 5. 진행했던 내용

○.처음에는 노동조합에서 ‘조합활동 피해자가 아니다.’(갑 제4호증 신분보장기금청구서 반려)라고 해서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2007가합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1743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498기각, 대법원 **2012다1543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495기각, 대법원 2012다10835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0007각하, 대법원 2013다809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30기각, 대법원 2014다6747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072각하, 대법원 2015다68584 상고이유서불제출기각. 서울고등법원2016재나35각하. 대법원 **2016다412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2016재나905기각. 대법원 **2017다2323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2017재나698기각. 대법원 **2017다5353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2018재나183기각.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 대법원 **2018다41429** 입니다.

○.고등법원 2010나73583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 6. 맺 음

갑 17호증은 1995년 5대 때 불법 집회한 노조간부님들 명단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95년 5대 때만). 6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고, 7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습니다. (5,6대는 불법 집회로. 7대는 명동성당 불법 파업집회로.) 어떤 분들은 해고됐다가 복직되고도 또 불법 파업집회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을 근거로 소송비용 및 복직 될 때까지 근무자와 동일한 월급에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넘게 혜택보고 복직한 분들도 여러 명 됩니다.

제가 8대 노동조합이 생긴 2003년에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사건으로 부당해고 되어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에 대하여 문의하니 노조간부님들은 파업집회하다 피해당한 것만 조합 활동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계시판에도 항의했는데 답변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2018재나183준비서면에 첨부)

신분보장제도의 실지는 노조간부들의 불법파업집회를 하기위한 위한 제도였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있을 수 있다면 조합원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즉 조합원전체의 신분보장 및 권리보호 하는데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재판을 중지시키셔서 대법원장님께 “민사소송법”을 정비해 달라고 권의 해주십시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 혹은 정비 된 후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참고 : 제출된 증거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 .갑 제1호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갑 제2호증 규약

-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
- .갑 제4호증 신분보장기금청구서 반려
-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 .갑 제7호증 확인서

##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 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 ※.갑 제 1호증은 착오로 잘못 제출됐습니다.(성남2007가합3175 관련 피고가 낸 것)  
다시 제출합니다. : 갑 제1호증 (2010나73583 때 제출)

2018.10. .  
재심원고 임 그 루  
대법원 귀중